

[행정소송] 불법리베이트 수수 적발 +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 완화된 개정 제재처분

기준의 적용대상이 아니더라도 참작 가능: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

76128 판결



(1) 기존 행정제재처분 기준 - 적발된 사안에 적용되는 기준

16) 법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법 제66조 제1항 제9호	
가) 벌금 2천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자격정지 12개월
나)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다) 벌금 1천5백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라)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마) 벌금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바) 벌금 5백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자격정지 2개월

(2) 새로운 행정제재처분 기준 - 완화된 제재수준의 개정 규정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받은 경우의 행정처분기준**

위반차수	수수액	행정처분기준
1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2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3차	2,500만원 이상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 ~ 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5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1,000만원 이상 ~ 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2개월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300만원 미만	자격정지 3개월

(3) 제재처분기준의 적용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 부칙

부칙(보건복지부령 제190호, 2013. 3.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행정처분기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별표 제2호 가목 1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별표 제1호 라목 4)나 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개정규정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4)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비록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반행위 당시 시행되는 종전 시행규칙 규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당시 ‘경제적 이익의 수수액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전력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는 경고처분이 적정하다’는 새로운 규범 상태가 생겼으므로, 이를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정도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5. 10. 선고 2017구합76128 판결

행정소송, 심판, 이의신청, 집행정지, 민형사소송, 법률자문, A~Z 수행경력

T. 02-591-0657 E. [kkh@kasanlaw.com](mailto: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http://www.kasanlaw.com)